

6. 축산물 위생처리 관계법규 해석 및 문제점

강 영 배*

머리말

인간이 생명의 보전과 영양의 증진을 위하여 먹는 식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식품중 특히 고기나 알, 젖 등과 그러한 것을 원료로 하는 축산식품(때로는 협의의 동물성 식품으로 칭함)에 있어서는 그 생산과정이나 처리과정, 보존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외부의 환경요인으로 영향을 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축산식품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에 그 조성과 성상에 있어서도 각종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변태되기 쉬운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축산식품에 대한 양질의 원료생산으로부터 가공처리 및 유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적인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수의사”的 공헌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세계 어느나라든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의사의 업무중 고유권한에 속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축산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畜產物加工處理法(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1,011호)을 제정하여 수의사의 전담업무로 시행하여 왔으며, 1984년 12월 31일자로

畜產物衛生處理法(법률 제 3,763호)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의 畜產物衛生處理法은 본문 24조와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포된 畜產物衛生處理法施行令(1985년 6월 28일, 대통령령 11,712호)과 畜產物衛生處理法施行規則(1985년 7월 3일, 농수산부령 938호)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축의 도살·해체 및 원유의 수집, 여과, 냉각저장과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축산업의 전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수산부 장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수의사가 아니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사업무를 행하기 위한 “검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건사회부 장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食品衛生法”(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 4,071호)과 동 施行令(1988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 12,472호)과 동 施行規則(1988년 3월 4일, 보건사회부령 제 814호)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 가축위생연구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한 “食品”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공무원중에서 “식품위생 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임명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가면허와는 관계가 없으며 전공별 학력, 위생기사, 소정의 교육과정(최소 2주) 수료 등 다양하다.

이와같이 특수식품이라 할 수 있는 축산식품에 관한 위생관리업무에 있어서 “畜產物衛生處理法”으로 규제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食品衛生法”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이론적으로도 法의 精神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법의 시행상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오류와 당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본편에 있어서는 축산물의 위생처리에 관계되는 법규정을 고찰해 보고자 하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안해 봄으로써 축산식품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수의기술상의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수축과 축산물

畜產物衛生處理法 제2조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獸畜”이라 함은 소, 말, 양(산양을 포함한다), 돼지(사육하는 벗돼지를 포함한다), 토끼,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거위, 칠면조, 사육하는 베추리와 사육하는 꿩 그리고 토끼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畜產物衛生處理法에 규정된 수축은 식용에 공하는 가축과 가금, 인공사육하는 야생동물중 벗돼지와 베추리, 꿩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그러나 동법 제2조 2항에 보면 위의 수축중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 다만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편의를 위한 임시적인 경과조치일수는 있을련지 모르지만 법 적용의 형평이나 법 효과 면에서는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적용제한의 단서조건은 다시 동법 동조 동호 2항에 있는 바와 같이 지정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농수산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작업장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혼돈과 민원 유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 효과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畜產物”이라 함은 수육 및 원유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동법 제2조 2호) “수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하며(동조 3호), “원유”라 함은 판매 또는 가공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와 양유의 원유를 말하는 것(동조 4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畜產物衛生處理法의 적용을 받는 “畜產物” 중에는 계란이나 오리알 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계란 등의 생산이나 가공, 위생처리, 유통 등에 적절한 법 적용을 하기 곤란하다. 예를들어 품질이 저하된 계란을 직접 유통판매하거나 위생처리를 할 수 없는 처리장에서 계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처리를 한다하여도 축산물 위생처리 법에 의하여는 규제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食品衛生法에 있어서는 食品의 정의를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이 가능하기는 가능하다.

어떠하든지畜產物衛生處理法 규정상의 모호점은 동법에 규정된바 없는 “계란”에 관한 문제가 동법의 시행규칙중 <별표 4>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기준에는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법에는 “축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란이 시

행규칙상에는 “축산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법규정의 시행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에 계란에 관련된 문제가 심사숙고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작업장과 검사원

畜產物衛生處理法 제2조 8호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도축장 또는 집유장을 작업장이라 말하며 도축장이라 함은 식용에 공할 목적으로 수축을 도살,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하고(6호), 집유장이라 함은 집유를 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하는데(7호), 한편 동 7항에 규정된 착유장까지를 작업장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동법 제3조 1항에 보면 수축의 도살, 해체와 집유는 이 법에 의한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해체가 가능하다.

즉, 부상, 난산, 산육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수축을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학술연구용에 공할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돼지와 양을 자가소비에 공하고자 할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2항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축을 도살, 해체한 자는 농수산부령(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는 동제 제1항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도살, 해체한 수육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학술연구용 도살의 경우인데(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에 대한 신고는 동 시행규칙 제9조(신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제

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지체없이라는 용어의 시한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적되며, 신고시에 사용하여야 할 신고서의 서식규정은 동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5호의 서식은 “자체검사원 승인서”로서 시·도지사 소관사항이며 같은 호내의 제5호 2의 서식은 “학술연구용 도살신고서”로서 시장·군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가지 서식상의 연관성이 없으며 소관기관도 다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마치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학술연구용 도살이 어느정도 법적효력의 범위안에서 보호 또는 제한받고 있는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검사원”에 관한 사항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畜產物衛生處理法 제2조 8호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檢査員”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작황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의사, 수의사 자격이 있는 수의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공수의 중에서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공수의)까지도 검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食品衛生法과 동 施行令에 있어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시킨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畜產物衛生處理法 제2조 제8호 하반부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自體檢査員”이라 함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축장 또는 집유장의 경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施行令 제4조(자체검사원의 지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영자가 소속 수의사 중에서 오년 이상 당해 축산물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

는 자 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선발 임명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이러한 자격의 제한이 형평성이거나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으며 동施行令 동조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체검사원의 승인 및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규정하여 동施行規則 제4조(자체검사원 교육), 제5조(자체검사원의 승인절차 및 업무), 제6조(검사기록부의 비치등) 및 제7조(자체검사원을 지정할 작업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체검사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수의사에 의한 전문적인 기술자문 내지는 기술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은 되지만 자체검사원의 신분상 민간업체 경영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와같은 행정상의 법적규제가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인지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다만 “자체검사원”으로만 정의되어 있을 뿐인데 실제적으로는 집유장에 있어서의 “우유검사원”과 도계장에 있어서의 “도계검사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자격의 인정과 자체검사원의 지정도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자체검사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던지 축산물검사원에 준하여 대상을 불문하고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체검사원 제도를 발전시키든지 양자간의 선택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체검사원에 대한 승인과 감독에 관한 업무를 행정권한 사항의 범위에 존속시킬것 같으면 앞으로 자체검사원에 대한 직무구분과 자격여건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개인회사의 기술고문 예우를 받는 사람과 초임봉급을 받는 사람의 직분이 구분되지 않고 검사원 수를 채우기 위한 자격여건이라면 실제적으로는 기술상의 또는 운용상의 맹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자

체 검사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검사업무에는 종사하지 않고 기술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직분을 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여러명의 검사원을 거느리고 기술감독의 역할을 하거나 회사(업체)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실제적인 검사업무 실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든 몇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3. 작업장의 설치와 시설

畜產物衛生處理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장의 설치허가권자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포함)이며 이때 허가사항으로는 설치허가와 품목허가가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허가권자가 불일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조 제2항에는 작업장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施行規則 제11조(작업장의 설치허가 등의 신청), 제12조(허가증의 교부 및 허가대장의 비치), 제13조(허가증의 제시),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신청), 제15조(허가사항의 변경), 제16조(수수료), 제17조(작업장의 시설기준등) 등에 세부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제17조에서 말하는 작업장이라함은 협의의 도축장만을 의미하며 도축장의 종류를 특급도축장, 1급도축장, 2급도축장, 특급도계장, 1급도계장 및 도토장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畜產物衛生處理法 제2조(정의 등)와 제3조(작업장)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비교할때 축유장과 집유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축유장의 시설에 관하여는 동施行規則 제26조에 기술되어 있으나(별표 7), 집유장 시설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바 없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다만, 동施行規則 제37조에는 작업에 필요한 용

기등(착유기, 냉각기, 집유텅크, 원유통, 도축검인기 및 도축검인용 색소)의 규격과 제조시설의 기준 등 그리고 동 허가사항에 관하여는 의외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에 있어서 농수산부 장관과 도지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향후 법 또는 시행규칙 등의 개정시 재고해 보아야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작업장의 허가기간은 동 **施行規則** 제17조 제4항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1급도축장과 1급도계장은 5년 이하, 2급도축장은 3년이하로 되어 있는데 특급도축장과 특급도계장, 도토장, 착유장과 집유장 등에 관하여는 허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지적된다. 동 **施行規則** 제18조에는 허가권자(도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년 1회이상 작업장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업장 시설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된다고 가정할때에는 과연 허가기간의 별도 규정이 필요할지 재고해 보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畜產物衛生處理法 제5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 허가권자(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준공검사의 신청에 관하여는 동 **施行規則**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작업장의 양도, 양수, 휴지, 재개,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동 **法** 제6조 및 동 **施行規則** 제20조(상속, 양도 등의 신고), 제21조(휴지, 재개, 폐지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고를 기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法 제18조)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도록(法 제23조)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허가권자(도지사)는 농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施行規則** 제40조 제3호). 그리고 동 별표 13에는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관계된 사항을 살펴보면 작업장 또는 용

기 등의 제조업을 상속받거나 양도, 양수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7일 내지 30일로 되어 있으며 동업을 휴지, 재개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고 내지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으며 동 업을 폐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업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施行規則**보다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畜產物衛生處理法** **施行令**(대통령령) 별표 즉,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는 작업장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施行令**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최대로 가중부과한다 하여도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일 법규내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순되고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畜產物衛生處理法**과 동 관계규정에서 여러군데 발견되고 있다.

4. 수축의 검사와 축산물의 검사

수축의 도살, 해체 및 집유의 방법과 축산물의 위생등급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畜產物衛生處理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 **施行規則**에는 제22조 별표 3에 있는 수축의 도살, 해체에 관한 사항뿐이며 집유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동 **法** 제10조와 제12조에는 수축의 검사와 축산물의 검사에 관하여 각각의 규정을 두고 대통령령 또는 농수산부령으로 권한을 이양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내용은 제7조와 제10조, 제12조 등을 차라리 분리시키지 말고 한데 묶어서 수축 및 축산물의 처리 및 검사 등으로 규정하든지 수축과 축산물로 구분하든지 또는 처리방법과 검사방법으로 구분하든지 여하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규의 내용을 보

다 명확하고 이해 또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동 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이득을 목적으로 수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기 위한 강제급수의 정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범법행위의 정도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또한 검사방법과 검사기준에 대한 규정설정이 곤란 하므로 실제 범운용상의 문제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동 제11조에 대한 별칙(法 제21조)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급수와 밀도살 범법행위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어딘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축산물의 처리방법, 수축의 검사, 축산물의 검사에 관하여는 法과 施行令, 施行規則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施行規則 중 별표로 구분작성하여 시행하고 있고,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장관이 고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축산식품의 소비증가 추세에 맞추어 보다 더 계통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위생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축의 도살, 해체 또는 집유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法 제8조), 이것은 수수료를 장관이 고시한다는 것이 아니며 각 작업장의 경영자가 동 施行規則 제2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축의 도살, 해체 수수료를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항목에 있어서도 法에는 部令(施行規則)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집유장에 있어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施行規則에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작업장의 사용수수료는 작업장 등급에 따라 또는 작업하고자 하는 가축의 축종에 따라 평균시가의 1.5%부터 5% 범위의 이내에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산물 가격과

소요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등락폭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상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범위의 설정 또는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장 사용수수료의 결정이 작업장 경영자의 소관사항(도지사 승인 포함)인데 비하여 검사수수료의 결정은 내수용인 경우 도지사의 소관사항이며 수출용에 한하여는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동 施行規則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용 검사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동 施行規則 제27조(검사신청 등) 제3항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도축하는 날의 3일전까지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畜產物衛生處理法에 따라 검사원에 의하여 수축검사 및 축산물검사를 받고 합격한 축산물이라 하여도 도축 3일전에 동물검역소장에게 도축검사신청을 내지 않은 축산물은 수출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별한다는 점과 내수용 검사기관(시·도)과 수출용 검사기관(동물검역소)을 구별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수출용 전용 도축장을 허가하지 않는 한 적절한 도축장에서 적법하게 도축되어 검사를 마친 축산물(식육 등)이 수입국의 위생조건에만 맞는다면 굳이 동물검역소에 도축전 3일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 보다 축산물 자체에 대한 수출용 검역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서 수출용 전용 도축장을 지정한다 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위생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차원에서 더 의미를 두게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용 축산물에 대하여는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용 축산물에 대하여는 畜產物衛生處理法 관계법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다른 法規인 家畜傳染病豫防法에 관계된 법규정에 따르고 있음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금지사항과 수급조절

畜產物衛生處理法에는 여러가지 금지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제9조에 작업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 해체 또는 집유의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이득을 목적으로 수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 제1항에는 식품제조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업자, 식품접객업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 경영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저장, 운반, 판매, 진열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는 농수산부 장관은 식품제조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업자, 식품접객업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 경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시킬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중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항인 제14조 2항에는 불량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① 농수산부 장관은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겸인용 색소등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농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그 제조방법의 기준이 정하여진 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수산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2. 12. 31), ③ 작업장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격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77. 12. 31)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금지규정들은 사실상 그 기준이 모호

하기 쉬우며 바람직 하다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으며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편 法 제15조에는 농수산부 장관은 공중위생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육과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캐순은 “수급조절”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공중위생상 유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자칫하면 법을 행사하는 의무를 가진 공무원에게 대하여 직무유기의 기회가 주어지게될 경우도 발생되기 쉽다. 또한 축산진흥에 필요한 경우라는 사항도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수육과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함은 위생처리에 관한 법규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지적된다. 수육과 원유가 과다하게 생산, 수급되는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불합격률 많이 낸다는 사항인지 수육과 원유가 부족하게 생산, 수급되는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좀 더 부드럽게 하여 불량품도 합격을 시킬것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조항들은 반드시 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위생처리법 본연의 의미만을 강조하는 법규가 되어야만 권위와 신뢰성 높은 좋은 법규정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맺는 말

축산식품 검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중, 축산물 위생처리에 관계된 법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며 결론적으로 몇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

을 요약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法의 목적이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밝혀져야 한다.

둘째, 수축과 축산물에 대한 정의와 포함된 내용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셋째, 축산물과 축산식품에 대한 정의와 한계가 뚜렷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축산물 위생처리법이라함은 예전에 적용해오던 “畜產物 加工處理法”的 일부 또는 부분 개정이나 추가로만은 불충분할 것 같다. 우유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보면 마치 도축장법(일본법규)과 유사하다.

넷째, 검사원에 대한 자격과 임연규정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하는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은 차원으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축산물 검사업무는 수의학을 전공하고 국가면허를 취득한 수의사만의 고유업무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체검사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 수의사에 대한 고용증대의 목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없으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수의사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업무량의 증가에 대한 민간인 전문인력(수의사)의 자체적 활용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게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인 자체검사원은 고용주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축산물의 위생검사를 통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임을 강조하여 고용주로부터 신분상 처우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축산물 종류에 따른 작업장의 설치와 허가, 시설기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축산물의 수급조절이라는 면보다는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작업장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는 어느한계 이상은 행정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수축 및 원유 등에 대한 검사기준 및 축산물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현실성 있

고 타당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물에 대한 처리가 축산식품으로의 가공까지의 어느 한계까지를 말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식품에 대한 용기, 기구, 포장에 대한 규정까지 있는 것을 보면 최종 가공단계까지를 축산물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실제 법조항에는 수축, 수육과 원유에 한정되어 기술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일곱째, 축산물에 대한 위생처리와 검사에 관계된 내용만 가지고는 본래의 法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수한 식품인 축산물에 대한 위생적 유통,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검사까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질병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법과 관계규정에 정해놓은 벌칙조항을 재검토하여 불균형 내지는 상치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적절히 개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수육과 원유에 관계된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꽤류와 봉산물(꿀벌에서 생산된 식품)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째류와 꿀벌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품은 동물약품 취급규칙(모법은 약사법임)에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어째류와 꿀벌에 대한 질병관리는 수산물과 봉산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품질결정에 깊이 관계된고 있으므로 전문가인 수의사의 관리영역으로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민도가 높아가고 경제적으로 더욱 윤택해짐에 따라 보다 더 고급스럽고 안전한 식품을 기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여 보다 더 좋은 품질의 축산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보다 철저하고 기술집약적인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제정(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지적과 의견제시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심사숙고한 의견의 검토, 협의, 조정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